

민영 미디어랩 도입 관련

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요지



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KOBACO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내리고 2009년 12월 30일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등에 따라 해당 정부 부처와 국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. 지난 5월 18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미디어랩 제도 개선을 포함한 방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입법의 형태

한선교 의원은 새로운 미디어랩 관련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, 방송법(제73조 등 관계항을 개정) 일부를 개정하는 형태로 추진하였으며, 따라서 기존의 미디어랩 관련 근거법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기(안 부칙 제3조, 제5조)하는 안을 발의하였다.

2 미디어랩 도입 형태

제73조의2(광고판매대행자 허가 등) 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는 이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
1.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, 공정성 및 실현가능성
2. 재정적 능력
3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
4.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계획
5.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,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향후 신설 미디어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방송사는 직접 영업을 할 수가 없다.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익성, 재정능력, 경영계획의 적정성, 방송광고 및 산업 발전 기여 여부 등이 주요 허가조건이다.

3 지분제한

제73조의 4(광고판매대행자 소유제한 등) ① 광고판매대행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. ② 누구든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립규제및공정거래이관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중 자사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(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)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. ④ 광고판매대행자는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다른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. ⑤ 정당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.

미디어랩사의 지분은 1인이 최대 51%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, 다른 미디어랩사의 복수부자는 불허된다. 또한,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기업집단과 정당은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.

4 업무영역의 제한

제73조의 7(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)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지상파 판매대행사업은 지상파 광고판매의 경우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, 이는 사실상 지상파

광고판매 이외의 사업도 가능토록 했다.

5 수수료 및 기금 조성

수수료에 대해서는 방송법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, 시행령에서 미디어랩사 및 광고대행사 대행수수료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디어랩사에서 징수대행 할 기금 한도를 기존의 6%에서 7%로 1% 상향조정하였다. 기금은 방송사와 미디어랩사가 부담하게 되며, 기금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디어랩사가 전액 부담한다.

6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 및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전환

제73조의8(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등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및 방송광고규명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,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(이하 중 조에서 "공사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-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공사의 자본금은 1,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,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⑤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-중략-

- ⑥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 1.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방송광고판매대행
 2. 광고판매대행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분석
 3. 방송광고규명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
 4. 방송광고규명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
 5. 방송광고규명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